

#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5,793,099	10,373,793
일반회계	275,216,759	8,256,503
특별회계	70,576,340	2,117,290
공기업특별회계	30,840,554	925,21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840,554	925,217
기타특별회계	39,735,786	1,192,074
수질개선 특별회계	27,097,603	812,928
주택사업 특별회계	5,963,102	178,893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47,241	25,417
자활기금 특별회계	1,696,652	50,90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601,627	78,049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71,480	26,144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38,411	13,152
기반시설 특별회계	30,979	9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88,691	5,66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69,33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무차입한도액은 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